

하나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시행일 : 2026.06.30

제 1 장 총칙

제 1 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하나카드(주)(이하 '카드사'이라 함)에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 하나비씨카드 포함)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카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지정카드(계좌지정기업카드 포함. 이하 '사용자지정카드'라 함)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 (이하 '공용카드'라 함. 법인명익카드 포함)
 2.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 (이하 '사용자지정카드'라 함. 임직원명익카드 포함)
 3. 사용자지정카드 중 카드대금 결제계좌를 사용자 명의로 지정한 카드 (이하 '계좌지정기업카드'라 함.)

제 2 장 회원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제 2 조 (회원의 책임)

- ① 회원은 사용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회원은 카드사용자가 퇴사할 경우 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카드의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통하여 카드사용 관리를 통제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 가. 최대주주
 - 나.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 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주주
 -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은 제외)
 - 마. 무한책임사원
 2. 회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3. 회원이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 그 구성원(조합원)
 4. 제 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 3자
- ② 제 1 항 제 1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③ 연대보증인은 회원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한 총 한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도 중액시 변경된 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한도 중액시 카드사는 연대보증인에게 변경된 한도에 대해 안내하고 별도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 ⑤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원이 카드사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한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⑥ 카드의 재발급, 갱신 등으로 카드의 유효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⑦ 연대보증인은 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연회비 등)가 해소되었을 경우, 보증기간 중이라도 카드사에 서면으로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1. 회원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② 제 1 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에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를 하여 처리된 건은 종전 약관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해지조항에 따릅니다.
- ③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경우, 카드사는 연대보증계약해지 요청서 및 본 조 1항의 해지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양도계약서, 주주명부, 퇴사서류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전항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기간 중 사용된 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 ⑥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10 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 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표시됩니다.
-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③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이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⑤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해 카드가 갱신·대체·재발급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⑥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의 보험료, 통신요금결제 등 회원,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하여 카드사는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 처리의 중단을 원하는 회원 등은 해당 가맹점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신청인)이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공용카드’, ‘사용자지정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합니다.

② 공용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기업명을 기재하고, 권한이 없는 자가 공용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 3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 3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종전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⑥ 제 2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 이행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 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② 회원은 카드사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 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초 연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2.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분할·합병, 기업명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 ④ 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⑥ 카드사는 별도의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카드사나 카드사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제1항 외의 별도 연회비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징구내역 및 징구금액을 회원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7조의2(연회비 반환)

-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제8조 4항에 따라 휴면카드를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한(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 2 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 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카드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 등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6.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8. 회원의 영업의 폐지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9. 회원이 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이민,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5. 회원의 영업의 폐지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 제6항의 사유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잔액(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가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신용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7항에 따라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제9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등 신용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의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⑦ 카드사는 제5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7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다음 연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⑨ 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 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제 4 장 카드의 이용

제 9 조 (카드의 이용 및 사용제한 등)

① 회원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허용한 경우 제 15 조 및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번호 사용을 통하여 해외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서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으로 위장한 현금유통 또는 그 밖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단,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갱신·대체·재발급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카드로 자동결제 되던 거래는 회원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 발급된 카드로도 유효하게 결제됩니다.

⑥ 회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당시에 회원과 가맹점간에 약정한 위약금 납부의무 등은 해당 약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해당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국내 및 해외 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는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IC 칩 비밀번호(PIN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의 이용 및 일부 해외가맹점의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카드의 이용한도)

① 회원의 이용한도는 법인한도, 사업자한도, 사용자별 한도로 구분합니다.

② 법인한도(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는 회원의 요청 한도 이내에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유효기한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 가지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에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예정일로부터 14 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1. 다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회원의 신용상태 또는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2. 소득하락, 부채의 증가, 제세공과금 미납 등 상환능력이 하락한 경우

⑥ 카드사는 회원이 이용한도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이용한도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⑦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2 조 (할부구입)

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 가능 금액 범위에서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더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을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⑥ 2개월이상 할부금이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할부철회권)

-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단,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날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 ② 제 1항의 경우 회원은 먼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가맹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여야 하며, 회원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인도받은 물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거래 가맹점에 반환하여 상호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할부항변권)

-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카드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 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는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한 일부 카드에 한하여 카드사가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해외 자동화기기(이하 해외 ATM) 등을 이용하여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제 1 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대출(현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현금서비스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해외 ATM,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제 3 항의 수수료 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해외 ATM 기 등의 이용)

해외 ATM 기 등의 가동시간, 1 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카드사, 제휴은행 및 외국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7 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마일리지 포함)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퇴(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퇴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퇴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③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 파산 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부가서비스를 3 년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④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 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 전화 또는 팩스(FAX), 휴대폰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일 6 개월 전부터는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1 호의 경우 6 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 3항 제 1 호, 제 2 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 3항 제 3 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⑥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고자 할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사용방법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 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 18 조 (현금카드기능 부여)

사용자지정카드 등 일부 카드에 한하여, 카드사와 제휴한 은행 계좌를 카드결제계좌로 지정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현금카드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카드로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카드 기능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5 장 대금결제

제 19 조 (대금결제)

-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등을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 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 ③ 제 2 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x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x 전신환매도율

-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보다 적어 제 1 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닝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계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연체이자 산정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윤년은 366)

⑤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⑥ 제 4 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 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이외의 경우 : <『상법』 제 54 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 86 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보다 우선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⑨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⑫ 카드사는 회원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⑬ 2 회 분할납부 및 결제조건 변경에 의한 분할납부는 철회권 및 항변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0 조 (자동이체결제)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 19 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이 갱신·대체·재발급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회원이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기존 카드의 자동이체결제계좌에서 자동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⑤ 전항의 사유 등으로 회원이 별도 자동이체결제계좌 설정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결제계좌를 새로이 변경 신청하는 경우 회원에게 기발급된 모든 카드의 이용대금이 새로 신청한 자동이체결제계좌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단, 계좌지정기업카드 등 자동이체결제계좌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는 카드별로 관리됩니다.)

⑥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마감시간(16 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⑦ 제 19 조 제 1 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 21 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 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또는 등재사실이 있는 경우
4. 회원의 영업의 폐지 등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 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 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 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2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등을 사유로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의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 22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 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3 조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 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 3 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 3 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 3 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 3 항제 7 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 1 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 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 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 2 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용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7.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 또는 보상신청이 허위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위조·변조카드 등에 대한 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 9 조제 2 항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 ③ 회원은 제 2 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 7 장 개인정보보호

제 26 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및 카드사용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 및 카드사용자가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을 위한 기업신용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제공하는 사실은 회원의 신용정보임)
 2. 카드를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제 3 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 (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전자우편(E-MAIL), 자택·직장·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카드 관리담당자 등 회원의 신용상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 1 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 8 장 보칙

제 28 조 (위반시의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9 조 (위법계약의 해지)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 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 개월 이전(제 1 항제 1 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 3 호의 경우에는 3 개월 이전부터 매일 알려드립니다.

1. 각종 요금,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2.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③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④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1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부속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2조 (관할법원)

-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3 조 (유보사항 및 경과 조치)

- ①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 약관에 따라 개인형기업카드(구 외환 법인개별카드, 구 하나비씨 개인형기업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회원 및 카드사용자는 카드의 유효기한까지는 종전 약관 중 개인형기업카드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② 제 17 조 제 3 항 제 3 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 ③ 제 17 조 제 4 항은 2014년 12월 26일 신규 발급 카드부터 적용합니다.
- ④ 제8조 제8항은 2015년 7월 21일 당시 제8조 제7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5년 7월 21일 당시 제8조 제7항에 따라 이용이 정지된 휴면신용카드가 제8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제7항에 따라 이용정지기간 중 회원이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 21일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7조 제3항 및 제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는 신규상품부터 적용됩니다.